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60호 2009. 12. 22(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입법예고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제2009-1305호) 2

◀ 고 시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09-110호) 6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09-111호) 7

○『가스시설 검사기관별』검사업무 위탁고시 개정고시(제2009-114호) 8

◀ 공 고 ▶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 공고(제2009-1302호) 9

회								
람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09-1305호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12. 22.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중심의 장사문화 시대의 도래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12년간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화장료 인상도 없었고 화장장 운영에 있어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화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화장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용어수정(안 제2조)
- 화장장 사용료 조정(안 제6조, 별표)
- 시내거주

(단위:원)

구 분	기 준	우현화장장		구룡포화장장	
		당 초	조 정	당 초	조 정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20,000	50,000	9,000	40,000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15,000	40,000	6,000	30,000
3. 개장유골	"	10,000	30,000	3,500	20,000
4. 사산물	"	8,000	20,000	2,500	10,000

- 시외거주 : 사용료의 100분의 300 ⇒ **사용료의 100분의800**
-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 규정 조정(안 제7조)
- 관내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화장장 이용 사전예약제 시행에 따른 시체의 접수시간 등 조정(안 제8조)

3.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992, FAX 270-2960)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3. “화장장의 사용”이란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사용실시”를 “사용일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사망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관내 거주자”라 한다)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관내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전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한다.

별표 1,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0,000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40,000원
3. 개장유골	"	30,000원
4. 사산물	"	20,000원

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0,000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30,000원
3. 개장유골	"	20,000원
4. 사산물	"	1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 :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골로 처리함을 말한다. 2. 화장장 : 화장장과 그 부속 시설물 모두를 말한다. 3. 화장장의 사용 :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 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4. 적출물 : 적출물이라 함은 태반, 사태아, 수술부산물 등을 말한다. 5. 개장유골 : 매장후 1년이상 경과한 유골의 경우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장장의 사용”이란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4. <삭제> 5. <삭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신청)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사용일시 2.~ 3. (생략)</p> <p>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1,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2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0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미리 징수한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시설 보호대상자 3. 기타 시장이 사용료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p> <p>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20:00까지 접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전염병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기간 외에라도 접수한다.</p> <p>【별표1】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이상의 일반시체</td> <td>1구당</td> <td>20,000원</td> </tr> <tr> <td>15세미만의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15,000원</td> </tr> <tr> <td>개장, 유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1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8,000원</td> </tr> <tr> <td>적 출 물</td> <td>1kg</td> <td>1,000원</td> </tr> </tbody> </table> <p>2. 소각장사용료 : 적출물 이외의 기타 물체 (kg당 500원)</p>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p>제5조(사용신청) 1. 사용일시 2.~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다만, 시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 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사망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관내 거주자”라 한다)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관내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장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 예약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기간을 변경 적용 할 수 있으며 전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기간 외에라도 접수한다.</p> <p>【별표】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 이상 일반시체</td> <td>1구당</td> <td>50,000원</td> </tr> <tr> <td>15세 미만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40,000원</td> </tr> <tr> <td>개장, 유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3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2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40,000원	개장, 유골	"	30,000원	사 산 물	"	2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40,000원																																
개장, 유골	"	30,000원																																
사 산 물	"	20,000원																																

현 행	개 정 안																																			
<p>【별표2】</p> <p>1.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이상의 일반시체</td> <td>1구당</td> <td>20,000원</td> </tr> <tr> <td>15세미만의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15,000원</td> </tr> <tr> <td>개장, 유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1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8,000원</td> </tr> <tr> <td>적 출 물</td> <td>1kg</td> <td>1,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p>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 이상 일반시체</td> <td>1구당</td> <td>40,000원</td> </tr> <tr> <td>15세 미만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30,000원</td> </tr> <tr> <td>개장유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2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1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30,000원	개장유골	"	20,000원	사 산 물	"	1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30,000원																																		
개장유골	"	20,000원																																		
사 산 물	"	10,000원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09 - 11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12.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 중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체육시설
 - 명 칭 : 포항 송라제니스 컨트리클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67-18번지
 - 성 명 : (주)홍익레저산업 대표이사 이상규
4. 사업계획 내용
 - 부지면적 : 1,008,872㎡

- 건축면적 : 5,282.16㎡ (연면적 9,403.64㎡)
- 사업기간
 - 당 초 : 2003.12.26 ~ 2009.12.25
 - 변 경 : 2003.12.26 ~ 2010.05.24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09 - 11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12.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상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소로1류2호선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67-18번지
 - 성 명 : (주)홍익레저산업 대표이사 이상규
4. 사업계획 내용

구분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당초	소로1류 2호선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상송리 일원	- 도로 개설 L = 1,476m B = 10.0m	2007. 8.23 ~ 2009.12.31	(주)홍익레저산업 대표이사 이상규
변경				2007. 8.23 ~ 2010. 05.2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09-11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21일

『가스시설 검사기관별』 검사업무 위탁고시 개정고시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관내에 설치된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의 위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업무는 【별표1】 과 같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는 【별표2】 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후단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검사 신청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고시 제2006-537호(2006.06.01)는 폐지한다.

【별표1】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의 업무 범위

법령구분	위탁기관	위탁 검사 업무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 -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령 제25조제2항제4호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공인검사기관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전문검사 기관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한국가스 안전공사	○시행령 제26조제3항 -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별표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검 사 기 간	검 사 지 역		비 고
1월 1일 ~ 3월 31일까지	남 구	해도동, 대도동, 송도동, 호동, 연일읍	다중이용시설은 검사지역 구분 없이 연 2회 실시함. (2/4분기, 4/4분기)
	북 구	청하면, 송라면, 신광면, 용흥동, 학산동, 대신동, 기북면, 기계면	
4월 1일 ~ 6월 30일까지	남 구	효자동, 이동, 대잠동, 지곡동, 장흥동, 대송면	
	북 구	두호동, 환호동, 항구동, 우현동, 창포동, 여남동, 득량동, 학잠동, 양덕동, 덕산동, 덕수동, 죽장면	
7월 1일 ~ 9월 31일까지	남 구	오천읍, 송내동, 장기면, 동촌동, 일월동	
	북 구	장성동, 홍해읍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남 구	청림동, 동해면, 인덕동, 괴동, 대보면, 구룡포읍	
	북 구	남빈동, 동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신흥동, 대흥동, 죽도동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09-1302호

수산업법시행령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21일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 제151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어업(축제식)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49-21
	성 명	김병관외2명
	주민등록번호	340111-*****
어업면허 기간	2009. 12.21. ~ 2019.9. 8.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선	
처분내역	어업면허 (경북양식어업면허 제1617호 재개발)	
면허면적	0.96ha	
처분 년 월 일	2009. 12. 21.	